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

의안 번호	관련 282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월 1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2021년 12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「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.

1. 개정경위

- 발 의 : 이상훈 의원(행정자치위원회, 더불어민주당) 외 26명
- 의 결 :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(2021. 12. 22.)
- 우리시 이송 : 2021. 12. 22.
- 재의요구 기한 : 2021. 1. 11.

2. 주요내용

「대안교육에 관한 법률」상 ‘서울특별시 교육감’ 소관의 ‘등록제’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‘서울특별시장’이 직접 지원하도록 조례에 근거 마련하고, ‘서울특별시장’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·시행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의무화(강행 규정)

3. 재의요구 사유

- 본 개정안은 「대안교육기관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‘교육감’ 소관으로 규정된 ‘대안교육기관 등록제’ 사무를 ‘서울시 조례’에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교육감 소관인 ‘대안교육기관 등록제’ 사무에 대해 직접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.
- 「대안교육기관법」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의 등록, 실태조사, 과태료 부과,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운영(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) 등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사무 전반을 ‘교육감’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(⇒ ‘대안교육기관 등록제’는 ‘교육사무’임)
 - ※ 법률(「대안교육기관법」) 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각 시·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 입안 중
 -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(10.29)
 -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사무 지원을 위한 조례 준비중(TF 운영)
- 「대안교육기관법」 제3조 및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, ‘동 법률의 규정만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1항제1호의 ‘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’고 하였습니다. (법제처 13-0052, 20-0254, 대법원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)
(⇒ ‘책무규정’은 재정지원 ‘법령근거 아님’)
- 따라서, 교육청에 ‘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사무’는 ㉠ 교육감 사무이고, ㉡ 법령에 재정지원 근거도 없으므로 ‘대안교육기관 등록제’ 사무에 대해 서울시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(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 시행령)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규정(붙임 1)

나. 서울특별시의회 이송 조례안(붙임 2)

붙임1 관련 규정

○ 「대안교육기관법」

-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(제5조 ~ 제9조) : 교육부 장관/교육감
-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(제12조) : 교육부장관/교육감
-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, 업무위임, 과태료(제20조, 제23조~제24조) : 교육감

○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
제18조(교육감) ①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·도에 교육감을 둔다.
②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·도를 대표한다.

○ 「지방재정법」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○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○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○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○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제32조(경비지출의 제한)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,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대안교육”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.
2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,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,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.)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기존 신고를 필한 대안교육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“대안교육기관”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대안교육"이란 <u>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·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.</u></p> <p>2. "대안교육기관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<u>아니한 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제4조(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)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.)을 <u>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<u>2021년도에 이 조례 제7조 2에 따라 입학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입학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"대안교육"이란 <u>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.</u></p> <p>2. "대안교육기관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<u>아니하고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,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,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u></p> <p>제4조(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)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.)을 <u>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<u>기존 신고를 필한 대안교육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"대안교육기관"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.</u></p>